

제250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「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6. 29.

임실군의회회장

1. 개정이유

임실군민의 날 기념행사명을 “소충·사선문화제”라 정하고 있으나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심의·의결에 따라 기념행사 명칭이 결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종전 “향토재건”을 “지역발전”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1조)
- 나. 군민의날 기념행사(안 제3조)

3. 참고자료

- 가. 관련근거 :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3조(위원회의 기능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 등
 - 1) 부패영향평가/규제심사 : 원안동의
 - 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 - 2) 입법예고(2015.5.29. ~ 2015.6.19.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붙임(미첨부사유서)

4) 관련법령 발췌문
임실군 조례 제 호

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향토 재건”을 “지역발전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기념행사 거행)”을 “(기념행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제3조제1항 중 “이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하며, 행사명을“소충사선문화제”라 한다”를 “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기념식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<u>임실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<u>향토 재건</u>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<u>지역발전</u>----- -----.</p>
<p>제3조(<u>기념행사 거행</u>)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<u>이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하며, 행사명을 “<u>소충사선문화제</u>” 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<u>기념행사 등</u>) ① ----- ----- <u>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.</u></p> <p>② <u>기념식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

임실군민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재정수반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

4. 작성자

- 행정지원과장 김학성

관리번호	2015A전북임실026		
정책명	임실군민의날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
	부서명	행정지원과	
	담당자명	신항섭	전화번호 063-640-2153
분석평가서 제출날짜	2015년 06월 03일		
주요 분석평가 내용 (행정지원과)			
종합 검토 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 특성반영,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○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: 해당 없음		
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 2015년 06월 04일 주민복지과장 (담당자/연락번호 : 박경숙/063-640-2123) 행정지원과장 귀하			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지원등에 관한 조례

제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축제의 종합적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2. 축제의 개최시기·축제명칭의 결정에 관한 사항
3. 축제사무의 위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축제의 심의·평가에 관한 사항
5. 축제 규모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7. <삭제 2012.06.15>

1. 개정이유

임실군민의 날 기념행사명을 “소충·사선문화제”라 정하고 있으나
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심의·의결에 따라 기념행사 명칭이 결정됨에
따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종전 “향토재건”을 “지역발전”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1조)
- 나. 군민의날 기념행사(안 제3조)

3. 참고자료

가. 관련근거 :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지원등에
관한 조례 제3조(위원회의 기능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등

1) 부패영향평가/규제심사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2) 입법예고(2015.5.29. ~ 2015.6.19.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붙임(미첨부사유서)

4) 관련법령 발췌문

임실군 조례 제 호

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향토 재건”을 “지역발전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기념행사 거행)”을 “(기념행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
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제3조제1항 중 “이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하며,
행사명을“소충사선문화제”라 한다”를 “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”
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기념식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임실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<u>향토 재건</u>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<u>지역발전</u>----- -----.</p>
<p>제3조(<u>기념행사 거행</u>)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<u>이날에 기념행사를 거행</u>하며, <u>행사명을 “소충사선문화제”</u>라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<u>기념행사 등</u>) ① ----- ----- <u>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를 개최</u>한다.</p> <p>② <u>기념식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

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재정수반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

4. 작성자

- 행정지원과장 김학성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체)

□ **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지원등에 관한 조례**
제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축제의 종합적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2. 축제의 개최시기·축제명칭의 결정에 관한 사항
3. 축제사무의 위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축제의 심의·평가에 관한 사항
5. 축제 규모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7. <삭제 2012.06.15>